C - 2 - 2020

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바지(Barge)선 이용 작업

4.1 바지선의 종류

(1) 기능별 종류

- (가) 비자항식 바지선 : 예인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바지선
- (나) 자항식 바지선 : 비자항식 바지선 이외의 바지선으로 자체항해가 가능한 바지선
- (다) SEP(Self Elevating Platform) 바지선 : 바지선에 고정용 장치(Leg)를 부착하여 수중의 견고한 지반에 고정할 수 있는 바지선



<그림 1> 건설공사용 비자항식 바지(Barge)선과 예인선



<그림 2> 건설공사용 SEP 바지(Barge)선

(2) 용도별 종류

- (가) 일반 바지선: 건설공사용 바지선, 모래운반용 바지선, 철강재운반용 바지선 등
- (나) 유조 바지선 : 석유제품 운반용 부선, 원유운반용 부선, 액체 화학품 운반용 바지선, 액화가스용 부선 등
- (다) 폐기물운반 바지선 : 폐기물운반용 바지선, 분뇨 운반용 바지선 등
- (라) 토운 바지선 : 준설토 운반용 바지선 등